의안번호	제93호
의결연월일	2022. 10. 31. (제119회)

의결사항

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대정부 건의안

(홍용채 의원 대표발의)

발 의 자	홍용채,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선애, 박승엽,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진형익, 최정훈, 한상석, 황점복 의원
발의연월일	2022. 10. 26.

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대정부 건의안

(홍용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3

발의연월일 : 2022년 10월 26일

발 의 자 : 홍용채,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선애, 박승엽,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진형익, 최정훈, 한상석, 황점복 의원 (31명)

1. 제안 이유

○ 1973년 도시의 인구집중 억제 및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1998년 사유재산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오면서 지방 중소도시권은 전면 해제되었음.

○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존치되고 있는 지역은 7곳으로 수도권, 광역시권을 제외하고 중소도시로는 창원특례시가 유일함.

○ 2010년 마산·창원·진해시가 통합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도심 한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등 당초 지정 목적을 상실하였고, 저출산 및 고령화·인구감소로 무질서한 도시확장 우려는 불식되었음.

2. 주요 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인구감소, 도시 팽창요인 감소 등 당초 지정 목적의 상실로 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해 줄 것을 창원특례시의회는 103만 창원시민의 이름으로 건의함.

3. 건 의 문 : 붙임

4. 건 의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상남도지사

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대정부 건의문

1973년 6월 도시의 인구집중 및 무분별한 도시확장 방지와 자연녹지 보존을 위해 지정된 창원특례시의 개발제한구역은 모두 248.5㎢로 전체 행정구역(748.05㎢) 면적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8년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사유재산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창원특례시를 제외한 지방 중소도시권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심지어 창원특례시와 같은 명분인 산업도시 주변 보호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던 여수권은 전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특례시는 해제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존치되고 있는 지역은 7곳으로 수도권, 광역시권을 제외하면 중소도시로는 창원특례시가 유일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은 무분별한 도시의 확장 방지와 자연녹지 보존이지만 현재 창원특례시는 인구의 감소와 시대적인 변화로 그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습니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창원시로 통합되면서 현재 창원지역에 지정되어있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심을 둘러싸고 있어 도시공간 구조가 단절된 형태가 되었고, 개발제한구역 외곽에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등 비정상적인 도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 수소 관련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공단 조성 부지 부족을 야기하는 등 오히려 도시발전을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특례시의 개발제한구역은 50년간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50년간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 및 개발제한구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 역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0년 동안 개발제한에 묶여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재산적으로 가치 없는 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도 없이 그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2조에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창원특례시의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필요성에 부합하는지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창원특례시의 개발제한구역은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인구 및 도시 팽창요인 감소 등 당초 지정 목적을 상실하였습니다. 첨단 산업화에 맞는 지속 가능한 발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창원특례시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해 줄 것을 창원특례시의회는 103만 창원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